

2024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Korea Worker Institute · Union Center

이슈와 쟁점

일 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교육·조사·연구 활동으로 미래세대와 노동하는 시민 모두의 권리보장과 사회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이슈와 쟁점은 전문 필진들의 글을 통해서 지금 이 시점에 한국 사회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하는 노동, 청년, 인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고민을 풀어봅니다.

vol. 25

타투 제도화 방향과 노동시장 과제 모색

- 타투이스트 노동실태와 직업가치 인정 -

타투 제도화 방향과 노동시장 과제 모색*1)

- 타투이스트 노동실태와 직업가치 인정 -

김 종 진 |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

윤 태 영 |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연구위원

I. 머리말 - 타투이스트 제도화 문제

- 1997년 줄리아 로버츠와 휴 그랜트 주연의 <노팅 힐>은 2019년 국내에 재개봉되었을 정도로 고전 영화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음. 영국 작은 소도시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는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음. 영화 시작과 동시에 마켓시장 한쪽 구석에 타투숍에서 하트 모양의 타투 시술을 받고 나오는 등장인물과 나레이션이 확인 할 수 있음. 아마도 세밀하게 영화를 집중 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음.
- 그런데 어느덧 타투는 우리 사회에서도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최근에는 개성과 적성 및 취향을 표출하는 패션아이템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미국에서는 타투 스튜디오가 21,000개, 프랑스는 4,000개, 영국은 3,000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호주도 관련 법률(지방정부)이 제정되어 합법적으로 시술이 가능한 상황임(문심명, 2021; 김대중 외, 2019).
- 타투(Tattoo)는 블랙워크, 라인워크, 트라이벌, 이레즈미, 올드스쿨, 뉴스쿨, 레터링, 두들(낙서), 수채화 등 다양한 종류의 형태가 있음. 타투 작업 방식은 크게 머신을 이용하는 '머신타투'와 직접 바늘로 점을 찍어 새기는 '핸드 포크'로 나뉨. 타투는 신체예술(body art)의 한 형태로 시술 절차와 시술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 적합하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30년 전의 대법원 판결(1992.5.22. 선고 91도3219, 무면허 의료 행위)에 기초한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나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시대 상황에 조응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음.¹⁾

* 이 글은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의 2023년~2024년 <이슈와쟁점> 연속 주제인 프리랜서(22호 프리랜서 정책과제 /2023.11.20., 23호 방송작가/2023.11.29., 24호 타투이스트/2024.01.18.) 3회차 발간 자료입니다.

1) 최근 법원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 2022년 청주지법(2020고정825 의료법위반)과 2023년 부산지법(선고2022고정569 의료법위반)의 사례인데, 부산지법 판시의 주요 요지는 눈썹 문신시술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라고 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지 30년 가까이 흘렀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

- 최근 21대 국회에서는 타투 입법안이 논의되었고 법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3.9.8.)에서는 타투 정의와 유형을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음. ‘타투’는 문신업으로 서화(書畵)문신행위 또는 미용문신행위 등을 포함하는 행위로서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함. 문신행위 유형에 따라 서화문신(예술적 표현)과 미용문신(미용목적)으로 구분함(법률안 제2조 1호, 2호, 3호).²⁾

[그림1] 타투 문신업 정의와 행위유형 구분



출처: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 법안 발의안(2023.9.8., 타투유니온, 2023) 토대로 필자 재구성.

- 물론 최근 몇 년 사이 타투 합법화를 둘러싼 논의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타투 입법’이 발의되었었음. 과거 타투는 비합법성 때문에 공식화된 직업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으나, 타투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그외 미용 관련 서비스종사원(42299: 타투리스트, 문신, 미용사, 면도사 등)’으로 구분됨.³⁾ 국내 타투리스트와 문신 시술사는 약 2만명 남짓으로 추정되며, 시술 이용자는 1,300만 명이나 되는 상황임. 현재 전업 타투리스트는 5,000명 남짓으로 추정되고 있음(한국타투협회, 2019).
- 타투 관심 증가와 맞물려 타투리스트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상황(업황부진, 경기불황 등)이 밝지 않은 상황임. 2021년 조사 결과 코로나19 시기 해외 일감이 끊긴 상태에서 타투리스트들은 일감 감소(63.7%)나 계절적 변동(11%)에 의해 소득 불안정성을 느끼고 있음. 실제로

동안 반영구 화장 시술을 경험한 누적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고, 문신 종사자가 3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문신 시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화했다고 지적한 점임. 청주지법 판시 요지는 반영구 화장의 의료행위인가에 대한 해석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본 것인데, 판단의 근거로는 반영구 화장행위가 의료행위라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음. 이같은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판단보류 결정을 내린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2007년과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문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의 위헌성을 놓고 판단을 보류한 점임.

- 2) 우선, ‘서화문신’은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원래의 생김새나 기능과 무관한 그림 또는 글자를 새겨 넣는 문신행위이며, ‘미용문신’은 미용을 목적으로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두피, 수염, 입술, 피부의 병변부위(튼살을 포함한다) 또는 상처·흉터부위를 비롯한 사람의 피부에 점·선이나 하나 또는 다수의 색상을 새겨 넣어 원래의 생김새나 기능을 강조·복원 또는 제거하는 문신행위임(타투유니온 내부 자료, 2023.9).
- 3) 타투 관련 NCS는 중분류 01.이.미용 > 소분류 01.이.미용서비스 > 세분류 03.메이크업 > ‘스킨아트 문양 디자인 (1201010336_19v5)’ 능력 단위임.

앞으로 타투 일감이 줄거나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 10명 중 2명(20.7%, 계속 유지 79.3%)이 나 되었음(김종진, 2021).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3년 전 ‘타투유니온’(2020.2)이 만들어지면서 타투 합법화 및 타투 이스트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타투 합법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해외 주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독일 등)에서 허가, 대상자 연령, 시설 기준 등 규제 사항을 다루고 있음. 주요 나라들에서는 감염 예방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에 초점이 있음.
-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향후 타투이스트 활동과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주요 국가들의 법제 현황 및 지원 현황을 검토하고 제도화 방향을 모색할 시점임. 타투 합법화와 별개로 현재 노동시장의 종사자 1인 개인사업자의 프리랜서 형태로 규정되고 있는데, 최소한의 노동시장 보호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사회안전망을 논의해야 할 시점임.
-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내 타투이스트의 노동환경과 주요 개선과제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음. 특히 이 글에서는 해외 몇몇 국가들의 제도화 현황 지원 그리고 국내 타투이스트 노동 시장 실태조사 비교분석(2021년, 2023년) 결과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⁴⁾

II. 주요 국가의 법제도 현황과 및 정책

1. 주요 국가의 법제도 현황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접근

1) 타투 법률 규제와 지원 유형

-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해외의 타투이스트 활동 관련 법제도는 대체적으로 지원정책이나 수립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보다는 허가나 대상자의 나이, 위생 및 시설기준 등 규제 사항을 다룬 법률을 중심으로 되어 있음. 대체로 주요 국가에서 타투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 제도화된 곳(영국, 프랑스)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화된 곳(미국, 독일)으로 구분 가능함.

4) 이 글에서 활용될 실태조사 결과는 타투유니온 의뢰로 2021년과 2023년 진행된 조사 내용이며, 2021년 타투이스트 조사는 필자의 기존 자료(2022.01.12)를 참고하면 됨(김종진, 2022, 「타투이스트 노동실태와 특징 : 일의 제도화와 노동안정성 과제」, 《KLSI 이슈페이퍼》, 제162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타투 합법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해외 주요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허가, 대상자 연령, 위생 및 시설 기준 등 규제 사항을 다루고 있음. 주요 나라들에서는 감염 예방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건위생 안전관리에 초점이 있음. 피어싱이나 타투 관련 교육 및 훈련의 경우도 심미적 측면의 전문성보다는 감염 예방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건 위생 안전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특히 타투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는 타투 제제(안료) 규정⁵⁾ 관련하여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98/34/EC, 98/48/EC)’과 ‘유럽 연합 규정(EG) Nr. 1907/2006 (REACH)’에 따라 2008년에 제정되었음. 이는 타투 시술 시 일반적으로 금지된 물질(제1조), 타투 제제의 상표명 및 물질의 유형 및 비율 대한 제조업체의 통지 의무(제2조), 제제 관련 정보 표시에 관한 사항(제3조), GMP 원칙에 따른 우수 제조 기준(제4조), 형사 처벌 및 행정처벌(제5조)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물론 독일 내 타투리스트 협회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독일 연방정부의 ‘녹색 7(Green 7) 및 청색 15:3(Blue 15:3) 안료 사용 금지 결정’에 대해 반발함. 협회들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안료는 대체 불가능하며 이 안료가 금지될 경우 타투 시술에서 사용하는 색상의 약 60%가 소실됨. 이에 2020년 이래 유럽 내 타투리스트 협회들은 안료 사용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청원을 진행함.⁶⁾

2) 중앙과 지방의 법률 규제와 지원 정책들

- 영국은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2)이나 미성년자 문신법(Tattooing of Minors Act 1969),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 등에서 요건이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하고 있음. 영국에는 문신 위생에 등급을 매기는 인증제도로서 THRS를 운영하고 있고, 이는 문신 및 피어싱 산업 연합(The Tattoo and Piercing Industry Union)과 영국환경건강연구소(Chartered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 당국에서 제공하고 있음.⁷⁾

5) 법안의 정식 명칭은 ‘특정 유사 원료 및 원료의 조제물이 포함된 타투 제제에 관한 규정-타투 제제 규정(Verordnung über Mittel zum Tätowieren einschließlich bestimmter vergleichbarer Stoffe und Zubereitungen aus Stoffen, Tätowiermittel-Verordnung, GBl. S. 37, 42)임.

6) 타투 안료 청색 15:3 및 녹색 7 유지를 위한 유럽연합 청원 Petition Nr. 1072/2020, eingereicht von Erich Männert, österreichischer Staatsangehörigkeit, zum Erhalt der beiden Pigmente Blue 15:3 & Green 7 in der Verordnung (EG) Nr. 1907/2006 (REACH)<https://www.europarl.europa.eu/petitions/de/petition/content/1072%252F2020/html/missinglink>(최종 검색일: 2022.12.30.)

7) 영국 타투 제도화 현황은 https://www.towerhamlets.gov.uk/Documents/Environmental-protection/Rating_Criteria.pdf 에서 확인 가능하고,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2) 원문 중 “PART VIII”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2/30/contents>), 「미성년자 문신법」(Tattooing of Minors Act 1969,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69/24/contents>),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

- 프랑스는 공중보건법 및 시행령 등을 통해 시술 업소 등록 및 절차, 자격, 위생조건, 시술용품 관리, 교육 이수 등 엄격하게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교육훈련체계는 교육훈련에 관한 명령에서 규율하고 있음. 특히 프랑스는 위생보건의무, 폐기물 처리, 고객응대 등 세밀한 규정이 있는 곳이며, 교육과 실습도 예술학교 및 대학 전공자들이 많음. 2008년 공중보건법에 의해 도제교육을 받는 타투이스트들이 직업활동을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교육(3일, 총21시간)을 정부가 인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함.
- 미국은 신체예술 시술행위를 주법 차원에서 제도화 및 규율이 되어 있으며, 거의 대부분 주들은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화(45개 주에서 부모 동의 통한 미성년 타투 가능)하고 있으면서도, 질병 예방과 위생 여건 관리를 규제하고 있음.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안전신체예술법」(Safe Body Art Act)을 통해 제도화되어 있고, 일부 주에서는 문신 면허제도(애리조나, 알래스카, 플로리다, 하와이, 아이오아, 캔터키)를 하는 곳도 있음.⁸⁾
- 독일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타투이스트 활동에 협조적인 곳으로 독일(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조레 및 협회 교육)이 있고, 타투 자격과 교육과정은 물론 프랑스처럼 타투 예술가 노조 청원 활동을 하는 곳도 있음. 독일에서 타투 시술은 민법 제 631조에 따른 작업계약이며 타투이스트는 시술 시 작업계약의 일반적인 의무사항을 따르는 것임(민법 제 635조 작업물 보완 등, 제275조 추가 보수 과도한 비용 거절 등).

2. 권익개선 활동 유형 - 노동조합(프랑스)과 협회(독일) 개입 유형

- 프랑스 타투노조는 권익향상과 개선 활동을 위해 노조 결성 및 다양한 활동을 한 곳임. 프랑스 타투이스트들은 2003년 타투 예술가 노동조합(SNAT)을 결성했음. 당시 2명의 타투이스트는 건강 및 보건 관련 전문가(명예 회원 : 변호사, 의사, 건강보건 전문가 등 지원)들과 함께 위생 헌장(2003.7)을 만들면서 시작했음.⁹⁾ 타투 노조는 2005년 공식 사이트 개설을 통해 타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74/37/contents>) 각기 해당 내용 확인 가능.

8)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타투 관련 사항은 법령정보사이트 (https://leginfo.ca.gov/faces/codes_displayexpandedbranch.xhtml?tocCode=HSC&division=104.&title=&part=15.&chapter=7.&article)에서 확인 가능하고, 국립입법조사처 발간 보고서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63&brdSeq=36411>)에서 관련 사항 확인 가능함.

9) 프랑스 타투 노조 초기에는 노조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하여 노조보다는 협회의 성격으로 조직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노동조합으로 결성이 되고 활동을 시작했음. 이후 2011년 2월에 새로운 직업 헌장을 만들고 이 헌장을 기반으로 현재 활동 규칙등이 만들어졌으며 타투이스트들의 활동을 하나의 예술 분야로 확장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투이스트 지위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활동을 1년 동안 지속했고, 2011년 2월 새로운 직업 현장(활동 규칙, 예술분야 확장 노력) 활동을 했음.¹⁰⁾

[표1] 독일 타투 DIN 표준 주요 내용¹¹⁾

사후 관리 및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정보	타투 과정 자체에 대한 지침	부록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작성 양식(템플릿)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술에 적합한 작업방법과 장비를 지정 - 폐기물 관리, 청소, 소독, 장비 및 시설의 멸균 - 타투 부위에 대한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과의 상호 작용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 - 크림, 면도기, 주걱, 종이 타월, 컬러 캡, 스킨 클렌징 제품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 구조, 감염 전파 또는 타투 안료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 타투 시술 전 동의 선언 등 관련 양식 예시

○ 독일 타투협회 조직은 각 나라별로 다양한 활동(교육체계, 인식제고, 권익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독일은 타투협회(1995년), 프로 타투(2011년), 피어싱협회(2006년) 등 5개 조직이 있음. 타투협회는 1995년 설립되어 다양한 활동(저작, 지침, 시술, 세미나, 표준, 위생, 회원대상 교육 등)을 하고 있고, 2020년 ‘타투-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술’(DIN)을 발간했음. 독일 타투협회는 창작물을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그대로 시술하거나 왜곡하여 시술하는 것 등을 규율(저작권법 제14조, 제23조)하는 청원 운동 등 인식 개선 캠페인 등도 진행하고 있음. 독일 타투이스트 중 사회보험 당연 가입자(980명)도 있고, 미니잡(Minijob) 면제자(200명)도 확인됨.

[그림2] 독일 타투이스트 협회 홍보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출처 : 독일 각 타투 2030 홈페이지 및 해당 자료 필자 재구성.

10) 프랑스 타투 노동조합 관련 내용은 <https://www.formationtateur.fr/l-ecole/>에서 확인할 수 있음.

11) 타투 관련 해당 내용은 DPG 홈페이지(<https://www.dg-piercing.de>)를 참조 할 수 있고, ‘Tätowieren - Sichere und hygienische Praxis (DIN EN 17169)’의 전문은 홈페이지(<https://www.beuth.de>)에서 확인 할 수 있음.

Ⅲ. 타투이스트 노동시장 주요 실태와 특징 : 2021-2023¹²⁾

1. 타투이스트 노동시장 상황과 특징

- 타투이스트 노동시장 일자리 이동 흐름을 보면 다수는 바로 직전에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2021년 84.3%, 2023년 83.3%)였거나, 학생 혹은 취업준비 등 비경제활동 상태(2021년 32.5%, 2023년 38.5%)였음. 타투이스트 이전의 고용형태는 고용안정성이 높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에 기간제 계약직이나 파트타임도 10명 중 2명 내외였음([표2]).

[표2] 타투이스트 이전의 경제활동 및 고용형태(2021, 2023)

	이전 경제활동 상태		이전 종사상 지위 - 고용형태							
	비경제활	경활	자영업 고용주	정규직	무기 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시간제	특수 고용	다른 프리랜서	
2021년 조사	32.5%	67.5%	4.8%	51.8%	6.0%	16.9%	9.6%	2.4%	8.4%	
2023년 조사	38.5%	61.0%	5.6%	50.0%	8.3%	15.3%	9.7%	2.8%	8.3%	
활동 기간	2년 미만	30.8%	69.2%	22.2%	33.3%	11.1%	11.1%	0.0%	11.1%	11.1%
	2-4년 미만	34.4%	65.6%	4.8%	38.1%	14.3%	19.0%	9.5%	4.8%	9.5%
	4-6년 미만	38.7%	61.3%	5.3%	63.2%	0.0%	10.5%	15.8%	0.0%	5.3%
	6년 이상	43.9%	56.1%	0.0%	56.5%	8.7%	17.4%	8.7%	0.0%	8.7%
연령	19-34세	46.2%	53.8%	6.1%	49.0%	10.2%	18.4%	10.2%	4.1%	2.0%
	35세 이상	11.5%	88.5%	4.3%	52.2%	4.3%	8.7%	8.7%	0.0%	21.7%
성별	여성	41.1%	58.9%	7.5%	52.8%	7.5%	15.1%	7.5%	1.9%	7.5%
	남성	26.9%	73.1%	0.0%	42.1%	10.5%	15.8%	15.8%	5.3%	10.5%

* 주: [표]에서 활동기간, 연령, 성별 등 주요 응답 내용은 2023년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임(이하 [표]동일)

- 타투이스트 일의 만족도는 60점(100점 만점 기준) 남짓인데, 10개의 일자리 만족도 중 상위 항목은 △적성과 흥미(21년 90.5점, 23년 87점), △일의 자율성과 권한(21년 77.7점, 23년 78점)이던 반면에, 만족도 하위 항목은 △직업안정성(21년 17.7점, 23년 27.6점), △보수소득(21년 46.5점, 23년 46.8점)으로 확인됨. 타투이스트 중 활동기간이 길고, 연령이 많고, 부업 활동을 하고,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집단이 일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표3]).

12) 이 부분은 타투이스트 노동환경 실태 파악을 위해 2021년과 2023년 각기 조사된 자료를 비교했으며, 각 영역별 변수의 응답은 2023년 조사 현황임. 2023년 실태조사는 3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25일 동안 진행되었고,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타투유니온 커뮤니티에 조사 링크를 통해 개별 작성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조사 표본은 총 117명(여성 90명, 남성 26명)이며, 미혼/비혼(76.1%)이 다수였고, 평균 연령은 30.9세(19-34세 77.8%)였음. 조사 대상 타투이스트 다수는 수도권(78.8%)였고, 활동기간은 2-4년 미만(27.4%)과 4년-6년 미만(26.5%)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 타투이스트 10명 중 6명은 전업으로 활동하고 있었음.

[표3] 타투이스트 일자리 만족도(2021, 2023, 단위: 0점~100점)

		만족도 종합	보수	직업 안정성	작업 활동 시간	일하 는 환경	일과 삶 균형	개인 발전 가능성	일자 질 성 권한	노동 강도	일 적 성 취	업무 평가 시스 템
2021년 조사		60.6	46.8	27.6	58.1	65.4	57.5	68.6	78.0	54.5	87.0	63.0
2023년 조사		61.1	46.6	17.7	59.6	63.9	61.8	67.7	77.8	62.8	90.6	62.2
활동 기간	2년 미만	61.2	44.2	19.2	53.8	69.2	57.7	71.2	73.1	67.3	90.4	65.4
	2-4년 미만	60.2	40.6	19.5	58.6	67.2	63.3	68.0	78.1	57.8	89.8	59.4
	4-6년 미만	65.0	49.2	19.4	67.7	66.9	65.3	71.8	83.9	71.0	91.9	62.9
	6년 이상	58.7	50.0	14.6	56.1	57.3	59.1	63.4	74.4	59.1	90.2	62.8
연령	19-34세	62.0	48.6	18.4	61.8	64.0	62.6	68.1	79.4	62.6	92.0	62.6
	35세 이상	57.7	39.4	15.4	51.9	63.5	58.7	66.3	72.1	63.5	85.6	60.6
활동 지역	수도권	60.4	45.4	17.9	58.2	63.9	60.9	69.0	76.4	62.2	89.4	60.6
	비수도권	63.6	51.0	17.0	65.0	64.0	65.0	63.0	83.0	65.0	95.0	68.0

○ 타투이스트 전업과 부업 여부는 소득이나 일 경험 등 요인 때문인데 약 3분의 1 정도(21년 38.5%, 23년 39.3%)가 부업으로 다른 일(two job)을 하고 있는 상황임. 다수의 타투이스트들이 부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비자발적 요인으로, ‘불규칙한 소득’(21년 42.9%, 23년 43.5%)이나 ‘소득 보충’(21년 38.8%, 23년 34.8%)과 같은 프리랜서 형태의 일자리 특징인 소득 불안정성 때문이었음([표4]).

[표4] 타투이스트 이외의 투잡 여부(2021, 2023)

		투잡 여부		투잡 이유					
		아니오	예	투잡 통해 소득 보충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일자리가 전망이 없어서	현재 일함으로 써 다른 경력개발	일이 흥미로워 서	기타
2021년 조사		63.5%	36.5%	38.8%	42.9%	-	12.2%	4.1%	2.0%
2023년 조사		60.7%	39.3%	34.8%	43.5%	4.3%	8.7%	6.5%	2.2%
활동 기간	2년 미만	38.5%	61.5%	50.0%	50.0%	0.0%	0.0%	0.0%	0.0%
	2-4년 미만	50.0%	50.0%	37.5%	37.5%	0.0%	6.3%	18.8%	0.0%
	4-6년 미만	64.5%	35.5%	18.2%	54.5%	0.0%	18.2%	0.0%	9.1%
	6년 이상	73.2%	26.8%	36.4%	36.4%	18.2%	9.1%	0.0%	0.0%
연령	19-34세	60.4%	39.6%	36.1%	41.7%	5.6%	8.3%	8.3%	0.0%
	35세 이상	61.5%	38.5%	30.0%	50.0%	0.0%	10.0%	0.0%	10.0%
성별	여성	58.9%	41.1%	35.1%	43.2%	5.4%	8.1%	5.4%	2.7%
	남성	69.2%	30.8%	37.5%	50.0%	0.0%	0.0%	12.5%	0.0%

○ 2021년과 2023년 타투이스트 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의 성격이나 창작 활동의 특성이 반영된 현상들이 확인됨. 우선 1주일 작업은 평균 3.4일~3.5일 전후였고, 1주일 평균 작업 시간은 18.1시간(전업 19.9시간, 부업 겸업 15.2시간)이었음. 1일 평균 작업 시간은 4.6시간(23년)~4.8시간(21년) 전후였고, 1건의 타투를 위해 사전 준비로 약 2.1시간(21년)~2.3시간(23년) 정

도 소요되는 것이 확인됨. 반면 소득 불안정성으로 1주일 부업(3.2일 21년, 23년 4.7일) 투여 시간은 더 증가하고 있음([표5]).

[표5] 타투이스트 노동상황- 작업 일, 시간(2021, 2023)

	타투 노동 상황					부업 노동 상황		
	1주 평균 작업 일	1주 평균 작업시간	1주 야간 노동	1일 작업 시간	1건 작업전후 준비시간	1주 작업 일	1주 작업 시간	
2021년 조사	3.4	-	0.9	4.8	2.1	3.2	5.6	
2023년 조사	3.5	18.1	0.4	4.6	2.3	4.7	6.3	
활동 기간	2년 미만	2.6	11.8	0.2	4.3	2.0	3.5	6.6
	2-4년 미만	3.1	14.2	0.2	4.1	2.0	6.1	6.6
	4-6년미만	3.3	15.6	0.3	4.3	2.0	4.1	7.1
	6년 이상	4.4	24.9	0.7	5.3	2.6	4.0	4.9
부업 여부	전업	3.9	19.9	0.4	4.7	2.3		
	부업	2.9	15.2	0.5	4.4	2.2	4.7	6.3
연령	19-34세	3.6	17.9	0.4	4.6	2.1	4.7	6.1
	35세 이상	3.4	18.7	0.6	4.7	2.6	4.7	7.1
활동 지역	수도권	3.6	19.0	0.4	4.7	2.4	4.7	6.3
	비수도권	3.2	14.6	0.3	4.3	1.6	4.7	6.7
플랫폼 이용 여부	유경험	3.9	23.8	0.6	5.2	2.6	2.7	8.3
	무경험	3.5	17.1	0.4	4.5	2.2	5.0	6.0

[표6] 타투이스트 연간 소득과 수입 감소, 작업소요 비용(2022)

	연간 소득(만원)		월수입 감소 고객 예약 취소(월 평균)		타투 작업 소요 비용		
	연간 총 소득	부업 총 소득	월수입 거의 없는 기간	월 고객 예약 취소 건수	작업 재료 지출 비용	최소 작업 준비 비용	
2021년 조사	3,000.2	434.8	2.8	1.8	57.2	-	
2023년 조사	3,892.6	1,443.0	3.7	2.3	70.5	10.2	
활동 기간	2년 미만	2,300.0	1,391.7	5.0	1.8	45.0	9.8
	2-4년 미만	3,089.9	1,315.9	3.6	2.7	37.8	10.1
	4-6년 미만	4,144.8	1,950.0	3.2	1.8	82.4	10.4
	6년 이상	4,669.2	966.7	3.8	2.6	93.3	10.1
연령	19-34세	3,809.5	1,207.3	3.6	2.4	69.7	10.5
	35세 이상	4,189.1	2,150.0	4.2	1.8	73.5	9.1
활동 지역	수도권	3,971.8	1,506.0	3.6	2.4	75.0	11.4
	비수도권	3,610.3	833.3	4.1	1.8	54.0	5.6

* 주 : 1) 2023년 조사 결과 부업(39.3%) 사유는 소득 보충(34.8%)과 불안정한 소득(43.5%)이 대부분이며, 일감 감소 주요 이유는 경기 시장 상황(41.9%)과 계절·시즌 등 불안정한 상황(26.5%) 등임.
2) 타투이스트 작업소요 비용은 주로 수수료, 장비 대여료, 재료 구입비 등에 지출되는 비용임.

○ 타투이스트 월평균 총 소득은 약 324만원 정도(연간 기준: 20년 3,000만원 → 22년 3,892만원)이나 부업 소득 약 120만원(연간 기준 : 20년 434만원 → 22년 1,443만원)을 제외하면 타투 활동 소득은 204만원에 불과하고 작업 소요 지출 비용(57만원, 최소 준비 비용 10.2만

원)을 제외한 순소득은 134만원에 그침. 타투이스트 중 월수입이 없는 기간은 약 3개월 남짓(21년 2.8개월, 23년 3.7개월이었고, 타투 고객의 예약 취소(no-show)는 월 평균 2~3건이었음([표6]).

3. 타투이스트 교육훈련 현황과 의견

- 타투 비합법화와 불안정한 일자리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타투 활동을 그만둘 의향은 14% 남짓에 불과한 실정임. 2023년 조사 결과 현재 타투이스트들은 △기본 업무(큰 실수 없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필요기간으로 약 10.2개월, △능숙업무(다른 사람 지도할 수 있을 정도 능숙 걸리는 시간) 필요기간으로 약 37.1개월로 나타나고 있음. 무엇보다 직종별 노동시장이 비제도화되어있기에 타투이스트 활동 평균 기간은 5.4년(21년 2.9년)로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이력경력이 확인됨([표7]).

[표7] 타투이스트 활동기간 및 업무, 업무 숙련 소요기간(2021, 2023)

	타투 활동기간 (년)	타투활동 그만 둘 생각(%)	업무 익숙 소요 기간 (개월)		
			기본 업무 기간	능숙 숙달 기간	
2021년 조사	2.9	13.7%	-	-	
2023년 조사	5.4	14.5%	10.2	37.1	
활동기간	2년 미만	1.1	15.4%	7.3	23.4
	2-4년 미만	2.9	12.5%	10.0	34.5
	4-6년 미만	4.8	16.1%	9.9	42.1
	6년 이상	9.3	14.6%	11.5	39.8
연령	19-34세	4.4	15.4%	9.6	36.9
	35세 이상	9.0	11.2%	12.3	37.8
활동지역	수도권	5.5	16.3%	10.6	37.5
	비수도권	5.1	8.0%	9.0	35.8
플랫폼 이용 여부	유경험	5.6	17.6%	10.6	36.3
	무경험	5.4	14.5%	10.2	37.3

* 주 : 1) 타투 일을 그만 둘 의향은 여성 14.4%(남성 15.4%), 미비혼 14.6%(기혼 15.4%) 큰 차이가 없었음.
 2) 기본 업무(큰 실수 없이 업무 수행 위해 걸리는 시간), 능숙 업무(다른 사람 지도할 수 있을 정도 능숙 걸리는 시간)

- 2023년 조사결과 타투이스트 업무 관련 직업훈련은 대체로 현장에서 선배(기존 타투이스트)들에게 배우거나 개인이 부담하여 스스로 교육을 받고 있었고, 외부 국가나 별도의 협회 등 통한 교육훈련 경험은 부재했음. 2022년 한해 동안 교육훈련 경험을 보면 △현장 교육훈련 유경험(31.6%), △개인부담 교육훈련(27.4%), △협회 등 제공 교육훈련(14.5%)였음. 실제적으로는 타투이스트 교육훈련은 10명 중 2명 내외에 불과했음.

- 한편 타투이스트들은 향후 타투 관련 교육을 받을 의향이 거의 대부분(무조건 받음 51.3%, 지

원 되면 받음 47%)이었고, 타 직업 훈련은 조건(지원되면 받음 75.2%)에 따라 의견이 상이했음. 활동기간이 짧을수록 교육받을 의향이 높았고, 전업보다는 부업 활동을 하는 타투이스트들이 교육 의향이 높았음. 일부 대상자들은 교육 받지 않는 이유로 ‘타투 일과 무관한 교육’(25%), ‘별도 교육 필요 없음’(20%), ‘교육받을 시간이 없어서’(15%) 등을 꼽고 있었음 ([표8]).

[표8] 타투이스트 업무 관련 직업훈련 유경험 및 향후 교육훈련 의향(2023)

	직업훈련 유경험 비율(2022)				향후 직업훈련 받을 의향(2003)						
	현장에서 배우는 훈련	개인 부담 교육 훈련	국가 비용 지원 교육 훈련	협회 등 교육 훈련	향후 타투 관련 직업훈련 받을 의향			향후 타투 이외 다른 직업훈련 받을 의향			
					무조건 받을 의향 있음	무조건 받지 않을 것임	지원시 받을 의향 있음	무조건 받을 의향 있음	무조건 받지 않을 것임	지원시 받을 의향 있음	
전체	31.6%	27.4%	0.0%	14.5%	51.3%	1.7%	47.0%	7.7%	17.1%	75.2%	
타투 활동 기간	2년 미만	76.9%	84.6%	0.0%	15.4%	61.5%	0.0%	38.5%	15.4%	15.4%	69.2%
	2-4년 미만	37.5%	28.1%	0.0%	12.5%	50.0%	0.0%	50.0%	9.4%	9.4%	81.3%
	4-6년미만	16.1%	19.4%	0.0%	16.1%	64.5%	3.2%	32.3%	12.9%	19.4%	67.7%
	6년 이상	24.4%	14.6%	0.0%	14.6%	39.0%	2.4%	58.5%	0.0%	22.0%	78.0%
1주 작업 시간	초단시간	36.4%	36.4%	0.0%	20.0%	52.7%	1.8%	45.5%	10.9%	12.7%	76.4%
	15-35시간	29.2%	20.8%	0.0%	8.3%	47.9%	2.1%	50.0%	6.3%	22.9%	70.8%
	36시간이상	21.4%	14.3%	0.0%	14.3%	57.1%	0.0%	42.9%	0.0%	14.3%	85.7%

IV. 맺음말 - 제도화 및 직업훈련 모색

- 타투는 신체피어싱(body piercing)으로도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취향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정도로 대중화되고 있음. 최근 부산과 청주지법의 판례를 보더라도 타투 합법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고, 향후 시술 전반의 안전보건 문제와 함께 제도화 모색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특히 타투 대중화 현실을 고려하면 부작용이나 감염 방지를 위한 위생상 안전 및 보건 그리고 관리 차원에서 직업훈련 등은 중요한 영역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타투이스트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특징적인 내용들이 확인됨. 우선 타투 시장상황 경쟁이나 일자리와 열악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타투 활동을 그만 두고 떠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임. 실제로 지난 2년 전에 비해 활동 경력기간 초기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했음. 결국 해외 일부 국가 및 지방정부 사례 등을 참고하여 타투 합법화와 교육훈련을 통한 노동의 가치 인정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유럽 타투 예술가 협회(United European Tattoo Artists e.V : UETA)¹³⁾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국제 협회로 등록되어 있음. 이들은 타투이스트의 이익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대변하고, 유럽연합 혹은 개별 국가 수준에서 과도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지침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도 함. 각 국의 타투 노동조합이나 협회 등 이해당사자 조직들은 타투 시술 시 위생 조건에 대한 최소 기준에 대한 가이드 책자를 발간(영어판 가이드)하면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우리도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참조하여 법제화 및 교육활동 그리고 권익 개선활동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프랑스는 2명에서 10명의 타투이스트들이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합법화 집회 260명 참석)으로 합법화를 이끌어 내었고, 다양한 지원 조력 그룹(분야별 전문가)을 활용한 특징도 있음.¹⁴⁾
 - 독일은 협회 조직은 타투 표준화 및 운영 모델(공중 위생, 관리와 절차, 저작권 등)을 고안하고, 자체 지위 개선 및 활동(세미나, 해외 타투 교류 협력, 캠페인) 등을 하고 있음. 특히 지방 정부에서 타투이스트 활동 지원을 도출하는 것을 볼 때 한국의 지방정부와 관계 형성이나 활동도 시사점이 있음. 최근 타투 안전 위생 시술 표준화 모델(DIN) 개발 및 배포 등은 한국에서 타투유니온이 참고할 사례로 판단됨.
- 사실 프랑스 인구의 10%(특히 25세~34세 인구의 20%) 중 한번 이상 타투를 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타투가 대중화 되면서 2009년 국가 인정 타투 전문학교인 프랑스 타투 에콜(L'E-F-T :Ecole Française de Tatouage)이 설립되었음. 이 학교는 프랑스 최초의 타투학교로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과정으로 파리 크레테이(Créteil) 캠퍼스를 비롯하여 전국에 총 8개의 캠퍼스가 있음.
 - 더불어 프랑스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원격 수업과정도 개설되어 있어 전 과정을 이수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직업교육의 5단계에 해당하는 타투 예술가 자격증을 받고 취업할 수 있음. 프랑스는 1년 과정의 전문학원도 있지만 타투 에콜에서 5단계 과정의 직업교육과 예술가 자격증을 받고 활동할 수 있음.

13) 이 글과 관련한 해당 내용은 UETA 홈페이지(<https://www.ueta.eu>)를 참조할 것.

14) 독일은 타투 시술 관련 규율이 없고, 타투 안료(색소) 규정과 도안 저작권법이 있으며, 타투이스트 양성 및 국가 자격 부여 관련 직업진입규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음. 반면 프랑스는 타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나 공중보건법에 근거하여 신고의무와 교육 조항을 의무화하고, 엄격한 위생 검열과 문신제품 관리를 하며 폐기물 처리 방법과 조건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 한편 영국은 타투 영업 면허(licence)가 필요하고, 문신위생등급 인증제도 운영하고 있음. 미국(캘리포니아주)은 타투 시술자 영업 등록 및 교육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갱신을 해야하고, 시설 허가요건도 규정하여 보건허가를 위한 시설 점검을 통해 허가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음(타투 교육훈련도 예술적 측면보다는 감염 예방과 부작용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타투 역량 성취 방법과 검증 방식의 효율성 및 숙련 구성 경로를 고려하여 타투 자격 및 교육훈련 방향 등을 논의될 필요가 있음. 자격체계 모색 방향은 필수적인 과정과 경험학습인정(RPL: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기반하여 예술행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음. 현재 타투유니온 또한 서구의 산별노조의 산업정책 활동처럼 향후 교육훈련과정 및 타투 업무 표준안 개발¹⁵⁾ 등 직종별 노동시장에 정책 사례(영화산업 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 우리도 타투 법제도화 과정에서 향후 자격 질 관리 및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타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및 직무분석 절차와 방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노사정 이해당사자들은 향후 자격체계 및 교육훈련 과정 그리고 연계 시행에 필요한 관리·운영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한편 프랑스 타투이스트는 자신의 활동을 프랑스 지역보건 기관(ARS)에 신고해야 하며, 타투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고 인증서를 제출해야하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 실시 교육기관은 정확한 세부 기준을 준수하고, 허가 요청을 하여야 함.